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9. 11.
시민보사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4월 19일 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4월 2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6년 9월 11일 제43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에 페스트로품을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규격봉투가격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를 기부담한 다량배출자와 일반배출자의 반입처리비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유도과 청소제정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에 페스트로품을 추가함.(안 제2조 제7호 별표1)
- 규격봉투 가격을 60%내외 인상함.(안 제11조 제2항 별표2)
-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시킴.(안 제11조 제3항 신설)
-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종량제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고지·수납 하도록 함.(안 제22조 제3항 신설)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유 재한)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처리하여 오던중 그동안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페스트로품이 '95. 10. 25일자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페스트로품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96. 3. 1부터 분리수거가 실시되므로 주민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인상안에 대하여는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이 서울시 전체구의 3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구로서 반입료도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장 반입비 인상과 미화원 인건비 인상등으로 부득이 인상하여 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앞으로 매립장 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는 각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는 물론, 수집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배출량을 점차 줄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이 스스로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봉투값 60%의 인상안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예상되므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의존하여 재정의 문제(반입료와 미화원 인건비 또한 청소관련 재정자립)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 최소화 하는 방법(예를들면 미화원의 과적체 현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해소방안이나 일반 대행업체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는)등을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23일자 국민일보 경제면을 보면,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10~15%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도록 서울시로부터 금년 1월과 4월에 지시되었으며 인상할 경우 7월 이후에 하되 단계적으로 15%범위 내에서 분산 인상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매립장에서의 반입료 인상이 50.7%가 오른 반면 미화원 인건비 인상등의 요인이 있으므로 적정선에서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요인에 대한 내용은 별첨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審 査 結 果 : 修正案 可決

※ (수정안 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6호
----------	-----------

제안년월일 : 1996. 9. 11.

제 안 자 : 전병운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부응하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쓰레기배출량의 감소를 위하여 규격봉투 인상요율 60%를 19%로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1. 규격봉투 가격 인상요율을 60%에서 19%로 수정.(안 제11조 2항)
2. 규격봉투 가격 구성에 포함된 처리비 사항 삭제(안 제11조 3항)
3.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의 처리비 고지·수납사항 삭제(안 제22조 3항)
4.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한도로 수정함.(안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2항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ℓ	80 원	
10ℓ	160 원	
20ℓ	310 원	320 원
30ℓ	470 원	480 원
50ℓ	780 원	800 원
75ℓ		1,200 원
100ℓ		1,610 원

(특수 규격 봉투)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100ℓ	930 원	980 원

안 제11조 제3항과 안 제2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규격봉투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처리비로 구성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의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는 영등포구의 수입으로 한다.</u>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제22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22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종량제 폐기물배출량에 수도권 매립지 고시 반입료를 적용하여 수시분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고지·수납한다.</u>	제22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1~4 5. 폴 라스 틱류	(생략)	(생략)	1~4 5. 폴 라스 틱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5. 폴 라스 틱류	개정안 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 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 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 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 과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 과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페스티 로폼	· 이물질 및 부착 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 닐속에 넣거나 묶 어서 배출 · 과일·생선 상 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 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가전제품 포장 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제 감량화 지 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 조자 등에게 감량 화 또는 회수·재 활용 의무가 부여 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 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 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 티로폼 완충제를 제조자 등에게 직 접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상양식용 폐부 자와 이물질이 묻 어 있거나 타재질 (PE, PP, 등)로 코팅된 페스티로 폼은 제외		개정안 과같음	· 개정안과같음 · 개정안과같음 · 개정안과같음 · 개정안과같음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규격봉투 가격(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2〉 규격봉투 가격(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2〉 규격봉투 가격(제11조 제2항 관련)		
(일반 규격봉투 가격)			(일반 규격봉투 가격)			(일반 규격봉투 가격)		
구분	가정용	사 업 장 용	구분	가정용	사 업 장 용	구분	가정용	사 업 장 용
5ℓ	<u>70원</u>	—	5ℓ	<u>100원</u>	—	5ℓ	<u>80원</u>	—
10ℓ	<u>130원</u>	—	10ℓ	<u>210원</u>	—	10ℓ	<u>160원</u>	—
20ℓ	<u>250원</u>	<u>270원</u>	20ℓ	<u>420원</u>	<u>430원</u>	20ℓ	<u>310원</u>	<u>320원</u>
30ℓ	<u>400원</u>	<u>420원</u>	30ℓ	<u>630원</u>	<u>650원</u>	30ℓ	<u>470원</u>	<u>480원</u>
50ℓ	<u>620원</u>	<u>670원</u>	50ℓ	<u>1,050원</u>	<u>1,080원</u>	50ℓ	<u>780원</u>	<u>800원</u>
75ℓ	—	<u>1,000원</u>	75ℓ	—	<u>1,620원</u>	75ℓ	—	<u>1,200원</u>
100ℓ	—	<u>1,330원</u>	100ℓ	—	<u>2,160원</u>	100ℓ	—	<u>1,610원</u>
(특수 규격봉투 가격)			(특수 규격봉투 가격)			(특수 규격봉투 가격)		
구분	가정용	사 업 장 용	구분	가정용	사 업 장 용	구분	가정용	사 업 장 용
50ℓ	<u>780원</u>	<u>820원</u>	50ℓ	<u>2,340원</u>	<u>2,380원</u>	50ℓ	<u>930원</u>	<u>980원</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1996. 4. 1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의 페스티로폼을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를 기부담한 다량배출자와 일반배출자와 반입처리비 부담의 형평을 기하며,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유도과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에 페스티로폼을 추가함.(안 제2조 제7호 별표1)
- 규격봉투 가격을 60%내외 인상함.(안 제11조 제2항 별표2)
-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시킴.(안 제11조 제3항 신설)
-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항으로부터 통보된 종량제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고지·수납 하도록 함.(안 제22조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리비 고지·수납에 관한 의견 제시(의견서 첨부)

라. 기 타 : 개정조례안(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별표 1>중 제5. 플라스틱류란 품목명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다음에 “페스티로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페스티로폼-	-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제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제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 (PE., PP등)로 코팅된 페스트로폼은 제외

제11조 제2항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일반 규격봉투 가격)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 ℓ	100원	—
10 ℓ	210원	—
20 ℓ	420원	430원
30 ℓ	630원	650원
50 ℓ	1,050원	1,080원
75 ℓ	—	1,620원
100 ℓ	—	2,160원

(특수 규격봉투 가격)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0 ℓ	2,340원	2,380원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규격봉투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처리비로 구성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의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는 영등포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종량제 폐기물 배출량에 수도권매립지 고시 반입료를 적용하여 수시분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고지·수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의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생략)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생략)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규격봉투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처리비로 구성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의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는 영등포구의 수입으로 한다.</u>		
제22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등) ① (생략)	제22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등) ① (생략)	제22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등)		
② (생략)	②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종량제 폐기물 배출량에 수도권매립지 고시 반입료를 적용하여 수시분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고지·수납한다.</u>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4	-(생략)	-(생략)		
5. 플라	-(생략)	-(생략)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플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스티류	-(생략)	-(생략)	스티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페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완충제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제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규격봉투 가격(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2〉 규격봉투 가격(제11조 제2항 관련)		
(일반 규격봉투 가격)			(일반 규격봉투 가격)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ℓ	<u>70원</u>	—	5ℓ	<u>100원</u>	—
10ℓ	<u>130원</u>	—	10ℓ	<u>210원</u>	—
20ℓ	<u>250원</u>	<u>270원</u>	20ℓ	<u>420원</u>	<u>430원</u>
30ℓ	<u>400원</u>	<u>420원</u>	30ℓ	<u>630원</u>	<u>650원</u>
50ℓ	<u>620원</u>	<u>670원</u>	50ℓ	<u>1,050원</u>	<u>1,080원</u>
75ℓ	—	<u>1,000원</u>	75ℓ	—	<u>1,620원</u>
100ℓ	—	<u>1,330원</u>	100ℓ	—	<u>2,160원</u>
(특수 규격봉투 가격)			(특수 규격봉투 가격)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0ℓ	<u>780원</u>	<u>820원</u>	50ℓ	<u>2,340원</u>	<u>2,380원</u>